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 43조”를 “제31조”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 중 “공무원, 소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

1.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6항· 제7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4.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 의 국장 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 연구관	3급 과장 상당 또 는 4급 과장 상 당의 직 위에 보 직된 장 학관 및 교육 연 구관	직위가 없는 장 학관 및 교육 연 구관	장학사 및 교육 연구사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 의 1급 20호봉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 의 2급 20호봉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 의 3급 20호봉	35호봉	30호봉	26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1. 기술 정보 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삭 제>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장은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7급: 월 10,000원 이하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2) 8·9급: 월 20,000원 이하 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교)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 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간호직렬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 외의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 등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	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교육 및 연구 분야	3. 연구 업무 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 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 이상: 월 60,000원 2) 6급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 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 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 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 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급액)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월 37,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월 32,000원
		(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 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 는 월 22,000원을 지	

		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3.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지급액)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월 60,000원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수당		
특수 장비 취급 분야	6.	가. <삭 제> <삭제> 나. <삭 제>	
	7. 함정 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나. <삭 제>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나) 6급: 월 32,000원 다) 7급: 월 25,000원 이하 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향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향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특수 행정 분야	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 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 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 개방형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지급액
직위 등	공무원	지급대상 월지급액
보전 및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1급 400,000원
전문직	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	2급 300,000원

위 수당	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3급	200,000원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4급	100,000원	
		5급 이하	50,000원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조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자유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역청업 무수당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금액
	원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1. 특수 직무수 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삭 제>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2) 4급: 월 100,000원 이하

	3) 5급: 월 80,000원 이하 4) 6급: 월 60,000원 이하 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 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중·특수 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차.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6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	1) 지급액: 월 10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2. 우수 대민 공무원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급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수당		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 상근무 수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이 호에서 “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월 50,000원 이하(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 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 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 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 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 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 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교 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 · 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 · 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16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55,000원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45,000원

비고

-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제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 3. (생략) 4. <u>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면직된 사람</u> 5. ~ 7. (생략) ② ~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